

답 변 서

사 건 2000가단0000 대여금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다 음

1. 기초적인 사실관계

- 가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에게 금 3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나.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 ●●●는 피고의 매형입니다. 소외 ●●●는 20○○. ○.경 사업문제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왔고 피고는 잘 알고있던 원고에게 혹시 여유 있는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소외 ●●●에게 소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.
- 다. 그 뒤 소외 ◉◉◉가 위 가항 일시에 원고로부터 금 30,000,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.

2. 피고의 책임

비록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인하여 소외 ●●●를 알게 되어 소외 ●●●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피 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한 적은 없습니다.

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일시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,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가 위 지급의 보증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원고는 소외 ⑥⑥⑥로부터 대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소를 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	(CO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축
제출부수	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
	·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
	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
	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
	법 제256조 제1항).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
답변서의	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
제 출	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. 다만,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
	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
	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).
	·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
	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).
의 의	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
	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(민사소송법 제148조, 제428조, 제430조).
	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,
기 타	·청구취지 :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
	•청구원인 :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
	구분,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,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
	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. ·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
	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
	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
	있으므로, 그 결과 의제자백(자백간주)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
	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
	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789 판
	결).
	·응소관할(변론관할)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
	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
	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(대법원 1980. 9. 26.자 80마403 결
	정).
	·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
	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
	(변론 전체의 취지)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(대법원 1981.
	7. 7. 선고 80다1424 판결).
	· 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, 그 관
	여 형식 및 내용,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, 거래의 관
	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
	문제이지만,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
	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(대법원 2000. 5.
	30. 선고 2000다2566 판결).
	50. C 2000 (2000 C.C.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변론과 그 준비 >> 답변서